

# 제316회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6월18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건
3.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심사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
2.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건 ..... 1
3.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6월 12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새누리당 정몽준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생각을 해 보면 정치 개혁만큼 중요한 일도 별로 없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다른 분야 일을 하려면 행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치 개혁만큼은 우리 국회가 정말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에 그야말로 초석을 놓는

일이 우리 정치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정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9분)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새누리당에서 추천하신 정몽준 위원님을 새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장인 김태년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

서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태년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하여 2013년 1월 21일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쇄신법안 10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과 6월 17일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국회쇄신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입니다.

국회쇄신특위안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본인 소유 재산, 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학교수직은 의무적으로 사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국회의원 특혜로 인식되어 온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쇄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국회쇄신특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미합의 상태로 두고 각 당 원내대표단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입니다.

국회쇄신특위안에서는 국회의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하여 국회의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를 형법상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국회의의 방해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쇄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 관련입니

다.

국회쇄신특위안에서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제19대 국회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하되, 기존 수급자도 재직기간이나 소득, 의원직 상실 여부 등에 따라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의원 재직기간 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연로회원 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포기하는 한편, 기존의 지급대상도 재직기간이나 소득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하고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국회쇄신특위안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등 22개 공직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 중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 처벌에 대하여는 그 현실적 필요성과 정략적 남용 우려 등의 찬반 의견이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국회쇄신특위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제도 개선을 추가 의제로 선정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년 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용은 책상 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표 예.

○심상정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그 의견서가 어떤 정치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왕의 입법이 진행되는 입법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문제이지 우리 특위에서 굳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각 법안에 대한 의견도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복잡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작년 대통령선거 전에 교섭단체별로 구성된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8명의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4개 부문에 걸쳐서 10건의 법률안이 이미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국회쇄신소위에서는 어저께 회의를 해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의 2개 법안,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의 3개 법안, 그리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의 1개 법안에 대하여는 당초 국회쇄신소위원회가 합의해서 법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확대하는 등에 대하여는 의견 접근을 보았는데 우리 헌법체계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헌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하자 해서 자료에 보면 4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보하고 1, 2, 3번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가 안고 있고 일부 여야 위원들이 이견이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6월 국회, 며칠 남지 않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촉구하는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저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나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 연로회원들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로회원들에 대해서는 상조회를 구성한다든지 별도의 어떤 의원들 간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법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는 국회폭력이 추방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또 이미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어서 사실상 국회폭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처벌조항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다른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과잉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좀 세심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말씀은 대체로 어제 우리 소위에서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폭력예방 처벌수준 같은 것은 법사위에서 다른 법률과의 양형관계도 고려할 테니까,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의견서는 오늘 의결을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촉구함으로써 우리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분야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이달에 통과를 시키자 하는 위원님들의 전체 중론을 모아서 의견서를 만들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의 없으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노근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은 의사 진행발언 형식을 빌리겠습니다, 가결을 전제로 해서요.

이런 내용이 전에도 의결되고 또 운영위원회에 넘어가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한 의지를 달아 가지고, 넘길 때는 그렇게 넘겨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넘기면 또 주저앉을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약간이라도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이노근 위원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강화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정치쇄신특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직접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채택된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서는 국회 쇄신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소관으로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해서 금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조속히 입법하여 줄 것을 더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쇄신 과제에 관한 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은 국회 쇄신과 또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일부나마 부응하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맡겨진 정치개혁과 국회 쇄신 과제에 관해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위와 특위 활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은 중앙선관위의……

○박민식 위원 위원장님!

○김태년 위원 이것 상정해 놓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진표 상정은 해 놓고.

상정하는 자리입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오셨나요?

### 3.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시21분)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박민식 위원 부산 북구 박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쇄신특위에서 지난번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장단점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헌성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쇄신특위 차원에서 예컨대 대한민헌법학회라든지 또는 지금 나와 있는 선관위라든지 이렇게 좀 공식적인 의견 조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우리 간사들끼리 한번 협의해 볼 생각이요.

둘째는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 쇄신 과제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천의 문제인데, 지난 17대 18대 똑같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좀…… 시일이 또 촉박합니다마는 이 상향식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공청회든지 또 여타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한번 우리 쇄신특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태년 간사님과 또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박민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먼저 원혜영 위원님의 사진행발언 듣고 또 이 위원님 하시지요.

○원혜영 위원 방금 지난 연말까지 운영됐던 국회쇄신특위에서, 위원회에서 합의한 4개 안 중에 3개안을 이번에 우리 정치쇄신특위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법제화 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쇄신특위가 만들어져서 벌써 6월 국회도 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속도로 이렇게 진행해서 6월 국회 중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7, 8월 하한기 가고 9월 국회에서 물려서 하는 식의, 우리가 익숙한 그런, 별로 국민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정도의 느슨한 진행으로는 과연 연말까지 정치 쇄신에 대한 큰 틀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말 국회가 바뀌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데 대비하는 대책으로써 특별한 회의 대책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이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제일 익숙한 게 조찬 모임을 정례적으로, 주 단위로 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국민들이 걸었던 국회 쇄신에 대한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힘드시지만, 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우선의 가치를 여기에다 부여하시고 참여해 주시는데,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전제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로써 특별한 회의 운영의 방침이 좀 결정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이 위원님!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 하신 정당 공천제의 위헌성 문제, 이것 지난번 공청회에서 진술하신 한 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단정적으로 ‘이것은 100% 위헌에 걸린다. 법률적으로 정당공천을 강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미국 일부 주와 다른 한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우리 정치쇄신평위에서 이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나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최대의 이슈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우스운 꼴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쇄신평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 또 선관위, 헌법학회 등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주는 것이 맞다……

공천제 부분을 지금 야당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겠다고 했는데,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이것을 어떻게 묻든지 뭐 하든지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줄기차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이게 막판에, 선거 한 달 아니면 보름 남겨 놓고 결판이 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정

말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벌써 6월 달이고 7월 8월 여름 하한기 가고 9월 달 가면 바로 정기국회인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여야가 이것 우리가 언제까지든 합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선언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은 거의 내년 지방선거 쪽으로 완전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위원 선거 문제도 일몰이지만 일부에서는 교육위원 선거가 또 새로 부활될 것이다라고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또 광역자치단체장하고도 러닝메이트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정치쇄신평위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까지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표 우선 이 세 분…… 같은 내용이면 말씀을 다 듣고, 다른 내용이면 이 세 개를 정리하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황주홍 위원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말씀해 주시지요.

○황주홍 위원 최근 들어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부각된달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을 뿐이지 오래 진행되어 온 논쟁의 하나라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대개 위헌을 얘기하는 분들은, 학자들은 헌법 8조에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정당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합헌이라는 분들은 8조에 대한 해석도 좀 달리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헌법 제118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8조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의원의 선거 방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8조에. 이게 합헌론자들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른 시간 내에 어떤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해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재확인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박민식 위원님이나 우리 이채익 위원님 말

썰처럼 한 번 정도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는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한 번 개최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표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정치쇄신평위의 지금 활동과 속도에 대해서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쇄신평위가 이렇게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긴장감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쇄신평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 정치쇄신평위가 마치 정치개혁의 열망을 방어하는 또 다른 혁신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쇄신평위가 이렇게 밖에 운영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위원장께서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치개혁, 기왕에 확정된 의제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국민의 열망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질의가 있을 텐데, 제가 다른 상임위 때문에 서면으로 제 의견을 제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지금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또 박민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채익 위원님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비단 발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치쇄신평위가 국민들의 정치 쇄신에 관한 뜨거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연 9월 말까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갖고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쇄신평위가 다루고자 하는 15개의 의제, 그중에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포함해서 박민식 위원이 오늘 얘기하신 상향식 공천제를 제도화하는 문제 등등은 우리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논의만 하고 의견서 형태로 정리한다든가 우리가 하나의 토론그룹으로 법안을 내는 것만 가지고는 관련 상임위원회—법사위나 안행위나 운영위원회—가서 또다시 재론되고 고쳐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쇄신평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이 정치쇄신평위가 보다 속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전제가 입법권을 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특위의 구성을 좀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교섭단체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원내대표단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법사위와 안행위의 법률 심사를 맡는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정치쇄신평위를 운영하고 입법권을 가지고 해야만, 그러면 9월 말까지 7, 8월 동안에 해서 우리가 책임 맡은 의제 다 마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달라라고 촉구를 해서 아마 오늘 양당의 수석들이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일단 15개 의제를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15개 의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9월 말 우리 예정된 기한까지는 우리 특위 전체로서의 단일한 의견이나 합의된 법안을 마련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박민식 위원님이 거론하시고 황주홍 위원님도 큰 틀에서 찬성하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학회 등에 좀 의견을 묻는, 법률적 의견을 묻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우리 공청회 이후에 각 교섭단체별로, 위헌성을 참여한 헌법학자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 당에서도 나름대로 헌법학자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 간사 간에 위임을 해 주시면 보다 분명하게 우리 기관으로서 우리 의사를 가지고 물어서 우리 입법에 좀 좋은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양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상향식 공천제 문제는 우리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의 7개 의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이고, 두 번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 방안, 이게 바로 상향식 공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정치쇄신소위를, 이게 워낙 중요한 안건들이니까 금주 중에 박차를 가해서 개최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상향식 공천제만을 가지고 한번 지난번 정당공천제와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상향식 공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 개최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예,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유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양당 간사 협의해서 상향식 공천제를 별도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데 그런 폐지를 안 하겠다는 전제가 됐을 때 상향식 공천이지, 이것은 우리가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그게 먼저……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안 했을 때 이것이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또 공청회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진표** 지금 상향식 공천제는 지방선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모든 선거에 다 적용됩니다.

○**유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또 야당 대표도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이미 천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윗분들의 얘기가 단순히 선거 때 포퓰리즘으로 그냥 얘기한 거냐, 이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상향식 문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공천 여부의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위헌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차선으로 상향식을 하든 어떻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향식 공천제 하자고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거의 안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제보다는 정당공천제 여부를 먼저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하고 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공천 상향식을 하든 어떤 그런……

○**위원장 김진표** 알겠습니다. 유승우 위원님이 정치쇄신소위 위원이신가요?

○**유승우 위원** 예.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정치쇄신소위 위원회에서 우선 제일 시급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위헌성이 제기가 됐으니깐 그 문제에 관해서 각 기관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물을 것은 묻고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제도—제 정당 대통령후보들이 다 공약한 내용입니다—이것도 또 짚기는 짚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실 것……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저도 유승우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선행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공천을 안 했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했을 경우 일어나는 부작용이 또 상당하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당공천 안 하는데 그러면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일정한 커뮤니티 단체가 사실상 공천을 다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정당 무공천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다 사실상 공천하니깐 이 문제의 조화 문제하고, 또 공천을 했을 때는 상향식 공천 문제인

데 이 상향식 공천은 실질적으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야 지도부에서 대부분 이게 지체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이것 찬성을 합니다. 마는 이것 역시 아까 다른 의제마냥 강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라도 담아서 이것을 결론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순서는 일단 공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총론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천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저는 작년도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 특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좀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위헌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보거든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시각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위헌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학자지만 학자의 의견만 저희들이 따를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명확성을 한번 해서 정말 정당공천을 안 하는 것이 위헌성이 명백하다면 방향을 달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호하게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빨리 명확성, 위헌성 여부를 확인해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는데 그것을 자꾸 쇠신평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고, 특히 9월 말까지가 한시적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몇 해도 또 8월 달이 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특위가 끝나

는 대로 바로 정치쇄신소위를 열어서 정치쇄신소위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공술인들로부터 충분한 논거가 개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면 달리하는 자문위원들을 전문가로 우리가 불러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불러서 그분들의 진술을 또 소위에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좀 더 공식적인 견해를 헌법학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로부터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각 기관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권위 있는 어떤 의견을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모든 위헌 부담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될 일이어서 결국은 정치쇄신소위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쇄신소위를 하루속히 열어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당 기관에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또 계속 묻는 쪽으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 선거 관련 제 법규가 중요한 정치쇄신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지금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일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회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정식적인 결정이 시간이, 최소 기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 기관에 그것을 존의견을, 결정이라든가 이것을 참고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다만……

○**위원장 김진표** 하여간 그 문제는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맡겨 주시면 각 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대로 각 기관의 의견이 우리 정치쇄신소위와 특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배석 간부도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중앙선거 위 사무총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변화된 선거환경과 성숙한 국민의식에 부합되도록 선거·정치 제도를 선진화하고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개정의견의 제출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0위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에 부합되는 선거·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제 제도의 혁신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최근 2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구현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정치발전을 이룬 것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의 정치관계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제 위주의 선거·정치관계법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에 따라 그 법을 집행해야 하는 우리 선관위가 권력기관화 되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입니다.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정치관계법이 너무 복잡하고 유권자는 물론이고 후보자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투표 편의와 후보자 정보 제공, 정책선거 유도, 선거·정치 교육 등 밝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규제 중심의 정치관계법의 틀을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민주주의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언제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은 현행보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당법 개정의견은 유급 사무원 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되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치자금 개정의견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의 실시간 공개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노근 위원** 몇 페이지인지 확실히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 줘요,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김진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로 배포된 것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인사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의견이 입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전판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더라도 선거비용 제한액은 현행을 유지하여 국민 부담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운동 실명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벌칙, 신고 포상금, 50배 과태료 등 선거부정 방지에 강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제도는 보다 강화되거나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정 심의에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정기국회 전에 우리 위원회 개정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중앙선관위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입니다.

박영수 법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개정의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약된 현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출 배경과 작성 방향, 개정의견 주요 내용 순입니다.

먼저 1면을 보시겠습니다.

제출 배경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선거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거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의견은 이러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먼저 유권자 측면에서는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 후보자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되 규제 완화가 선거과열이나 고비용 선거구조의 재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거운동 정보표시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면입니다.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자신의 집·자동차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으로 설치·철부·배부·게시가 금지되는 시설물과 인쇄물 등의 범위와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집회·모임을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3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후보자의 경우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횡수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4면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 정보 제공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쉽게 비교하여 볼 수 있는 형태의 후보자 정보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도 작성하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통합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후보자 정보자료와 함께 매 세대에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와 이에 대한 확인·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하고 언론사 등이 정책이나 공약을 평가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때 서열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자와 후보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질문·답변 형식의 옥내 정치토론을 허용하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5면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

운동 보장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 하되 선거운동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선거사무원 선임, 홍보물 배부, 자동동보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돈이 적게 드는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늘리되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명함 배부 정도만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세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6면입니다.

한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과열이나 고비용 선거구조의 재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선거비용 규제를 위하여 선거홍보물의 제작주체 등을 명시하는 선거운동정보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에 대하여도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7면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배우자,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통일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물과 당원 모집, 당사 설치 게시물, 현수막 등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유급사무원 인건비 총액 제한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8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하여 먼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

보조금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고 선거운동 기획비용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체감선거비용과 법정선거비용 간 괴리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전투표 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4시에서 6시로 하고, 거소투표, 인터넷신고 허용, 국내 거소신고한 국민의 선거권 부여요건 개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제안하였습니다.

9면입니다.

(김진표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방안으로 먼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신고·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등록 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표와 관련해서는 공관 외의 추가투표소 설치와 제한적 우편투표, 파병부대 병영 안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등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선거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10면입니다.

또한 선거부정감시단의 임무를 선거부정 감시에서 공정선거 지원으로 하고 그 명칭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장·절 체계를 도입하고 용어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복잡한 공직선거법 체계를 알기 쉽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체계정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의 시에 별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이것은 질문이 되겠습니까마는 5페이지에 보면 예비후보자 등록 있잖아요. 거기에 현행은 ‘선거별 특정기간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도 원래 한 12월 달 돼야 내년 단체장 선거는 예비등록을 하잖아요, 현행 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이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이것이 개정된다면 7월이고 8월이고 법만 발의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년 내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것은 아까 선거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한번 풀어 주고요.

또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그러면 여기에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표지물 또 자동동보 문자메시지, 이것도 4년 내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지금 현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만…… 이것은 금지된다는 겁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명함 배부가 예비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걸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굉장히 의문 나는 사항이거든요, 비용 문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비후보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데 돈이 들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명함 배부를 하는데도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가고 가족들도 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또 공약집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동보통신, 이것 대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돈이 많이 드는 제도를 없애고 단지 후보자 혼자만, 자기 부인도 되지 않고 후보자 혼자만 다니면서 명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시간은 당겨졌지만 돈은 거의 안 든다, 선거사무소를 둘 수도 있고, 본인 선택사양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적게 드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기반 배양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를 찍어 주십시오’ 하는 선거운동을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풀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막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서 이것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누구나 말로 하는 것, 지금 인터넷에서 하는 것은 다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이것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외에 누구도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년 간사, 김진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런데 당장 선거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허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문장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선거사무소는 뒤야 할 겁니다. 선거사무소는 신고해야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행정비용이 나가는 거고, 임대료가 나가는 거고, 또 거기에는 그 사람 상주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다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돈 안 드는 선거…… 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표** 황주홍 위원님 다음에 유승우 위원님.

**○황주홍 위원** 총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에서 우선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지금 세 차례의

TV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걸 적어도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좀 더 늘려서, 예컨대 한 5회 정도 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비교하고 알 권리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되도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2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상인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많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도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염증이 굉장히 팽배한 탓에 10% 넘는 후보들이 안 나온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손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부분이고요.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노근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 우선 선거운동을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에 상시적으로 하게 한다, 저는 기본이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정치문화라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하잖아요.

또 준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탈법이랄까 불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대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기한의 시한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당 선거가 종료된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서 허용한다든가, 그러니까 3년 동안 할 수 있게 하자 이거지요. 바로 끝나자마자 어깨띠 두르고 막 다니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도 어리둥절할 거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는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후보자는 명함 주러 다닐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무소 설치를 했는데 그럼 사무소는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난점은 아까 시행상의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선거사무소 설치에 대해 좀 엄격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자칫하면 문을 열어가지고 정말 4년 내 그냥 전국이 들쭉들쭉하고 사무실로 사람 불러들이고 만나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지금 입법 취지, 개정 취지는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황주홍 위원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우선 어깨띠를 4년 내내 두르게 하는 것 이것은 좀 뭔가 비현실적인 게 아니겠나, 명함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어깨띠를 선거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어깨띠 두르고 다니면서 다음 선거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시다.

그리고 홍보물과 공약집 같은 것도 결국에 나오게 되면 홍보물 공약집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4년 내내 막 공약이 제시되고, 물론 이상적으로 보자면 공약이 제시돼도 충분히 4년 동안 국민들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검증과 판단하게 한다 이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행상으로 아까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독특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선거문화가 좀 과격하달까 과열된달까 굉장히 집착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걸러지고 충분히 검토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토론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횡수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언론에서 토의하는 것 이것이 거의 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3회지만 다른 언론사나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그 횡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하고 달리 앞으로 선거 때에는 TV토론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횡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3회를 그대로 뒀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토론에서 10%에 따른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리고 이것도 입법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좀 더 연구해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 의견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리고 또 예비후보자 문제, 제가 답변드려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진표 말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비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상시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한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선거사무소를 두게 되면 어차피 전화하는 자원봉사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좀 보완돼야 되겠다, 어때서 두르는 것도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입법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냈지만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에는 이명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지요? 그리고……

(「유승우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유승우 위원님 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그리고 김관영 위원님, 또 함진규 위원님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위원장께서 왔다갔다 하시면 우리 회의가 안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탠스를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비대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들이 한마디로 법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한 게 많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후보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제시한 내용들이 상당히 공정성이라든지 자유로운 것을 많이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토록 하시고 안행위원회에 또 제출될 거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는 몇 가지, 6페이지를 보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48시간 내 인터넷에 공개하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선거가 아주 그냥 격렬하게 이루어질 때 이렇게 급히급히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사실 그 당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여유를 갖고 공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라고 하고서 ‘유급사무직원 수의 제한은 폐지하고’ 또 ‘유급사무원 인건비 총액을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를 폐지하고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조삼모사의 그런 것은 아닌지,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균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스탠스가 뭐냐, 아마 국회에서도 늘 여러 가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관리의 주무기관답게 ‘지금 너무 어렵고 규제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다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수년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선거법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너무나 방법상의 규제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규제가 심하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 이러한 방법상의 규제들을 다 풀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의 보고, 선거비용 수입·지출이 48시간 내에 가능하겠느냐, 아마 저희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숫자나 날짜 요목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만 손질하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한다면, 조금 교육 받고 이렇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의원들이 정당공천이 없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입법을 할 때 어떤 방법으

로, 조금 면제 내지는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다른 후보자의 경우는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실시한다면 의지만 가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의 유급사무원 수를 폐지하고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문제, 앞으로의 모든 부분은 대부분의 선진국들,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은 방법의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비용의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선진국답게 비용의 규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비용의 규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제한을 하고.

그러면 이 총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에서 각 정당이 인건비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서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큰 무리 없고 정당에서도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표 답변 끝났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신가요?

○이명수 위원 지금 말씀 내용을 들으면서 어쨌거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유권자 지향의 새로운 선거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선거제도를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나 정치자금제도가 서로 맞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게 생기겠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과 상충되거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뭐를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는 건 분명히 공감을 하고 우리 선거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 저희들이 몇 번 치르면서 정말 규제를 완화해야 될지 강화해야 될지 그런 것이 혼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비후보 등록 같은 경우 이것을 완전히 오픈시켜

서 평소에도 늘 선거를 하게 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쓰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결국 사무소가 생기고 사무소가 생기면 돈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용이 따르게 되고, 물론 선거 관련한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총액을 제한한다고 합시다만 실제 자칫하면 이게 선거과잉, 정치과잉, 돈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작용도 꽤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규제를 강화할 것과 규제를 완화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용 범위, 개선의 범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이런 방안을 개선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고 아직 우리 선거문화나 유권자 의식이 지금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부적인 검토가 된 뒤에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앞으로 여러 번의 검증과 논의와 심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총론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입법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 전반에 대해서 개정의견을 내다 보니까 좀 러프하고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문화 작업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하면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입법 심의 과정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채익 위원님, 그다음에 문병호 위원님 그런 순서로……

○김관영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선거사무를 관리하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 개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실제로 선거운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느낀 느낌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후보자가 폭넓게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트는 것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굉장히 여러 종류의 선거가, 특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2년씩 지금 번갈아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는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구요.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선거를 하기 전인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예비후보자 등록해 가지고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행보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더 넓히고 선거운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터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은 맞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만약에 기간 제한 없이 굉장히 많이 트다고 하면 적어도 유형에 따라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또 그 기한은 통상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하고는 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시기를 예를 들면 1년 안에는 이런 것이 허용되고 6개월 안에는 이것이 허용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몇 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예비후보자 하면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지금 나중에 본선거에서의 홍보물에 비해서 10분의 1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김관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대부분 각 당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선을 할 때 예비후보자 신분이다 보니까 본선거 때 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대로 다 돌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을 알리는 데 지극히 한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비후보자 때 홍보

물 전체를 다 돌리든지 아니면 본선거 때 돌리든지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번 회계책임자들에 관한 설문조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실무 관행들을 참고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스트릭트(strict)하지 않느냐, 엄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선관위에서 오신 분 말고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을, 지금 선거법 개정 관련 문제는 사실은 여야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정치쇄신평위에서만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고 각 당에서, 적어도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각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배포해서 각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좀 수렴한 다음에 그것들을 집합하는 그런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활동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개정안이 여기 지금 주요 요강 형태로만 되어 있지만 상당한 내용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관계법을 이것에 따라서 고치고 조문화 작업까지 되려면 양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문을 손을 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쇄신평위에서도 선거가, 우선 당장 큰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적응하고 교육시키고 홍보시켜 가지고 운영하려면 9월 우리 정치쇄신평위 끝날 때까지는 이게 완결이 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려면 정치쇄신평…… 현재는 이 법안이 정치쇄신평소위원회의 여러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쇄신평소위원회가 너무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박민식 간사, 김태년 간사와 함께 소위의 업무영역을 좀 조정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소위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함께 협의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법안을 안행위에서도 다



루고 우리 정치쇄신평특위에서도 다루고 그렇게 되면, 축조심이나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안행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니까 우리는 커다란 골격과 구조를 다뤄서 의견을 넘겨주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어차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 당이 의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치쇄신평특위에다 입법권을 주어서 선거법 관련 소위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각 당의 대표성 있는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다루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오늘 양당 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오늘 아마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개정의견을 냈는데요. 평상시의 선관위의 모습보다는 너무 개혁적인 안이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정부기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갑갑한 그런 정부기관으로 봤는데 오늘은 너무 이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시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단상황 또 우리가 가능한 한 정치의 비용을 좀 줄이고 정치 과잉을 조금 우리가 줄여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아직 나는 봐지는데 4년 내내 대한민국을 거의 정치장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당선된 사람의 위상에, 상당히 소신껏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선돼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으로 3년 이상은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소신껏 당선자가 하는데 또 낙선자는 낙선된 그 이후부터 계속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무실 내고 뭔가 했을 때 과연 이게 되겠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줄이자는 정책과는 굉장히 배치될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이론과 실재가 맞아떨어질 것인가?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입과 어떤 제도적인 이것을 풀고 진짜 어떤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자는,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주자는 그 주장은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낳을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입법단계에서 또 축조단계에서 많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가 이런 개정의견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관련된 개정의견을 빨리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말이에요. 기초선거,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 이것은 엄청난, 이것 뭐 나는 그 현장에서 겪은 사람으로서 이것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두고 정치권이냐 선관위가 가만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어떻게 말이지 기초의원선거에 지역 대표성도 전혀 주지도 않고 인구 많은 데서 모든 승자가 다 독식하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6개 읍·면에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데 제일 인구 많은 읍에서 3명을 전부 다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5개 면은 대표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리고 광역의원보다도 기초의원 선거비용이 몇 배로 더 많습니다.

이것은 등가성이…… 또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또 지역의 대표성이나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은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개정의견을 내주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또 말하면 소수·군소야당에서는 극력 반대합니다. 중선거구 안 하면 우리는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또 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을, 정치권이 말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정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우리 중앙선관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이러한 법은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다만 일본 법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의 통금 해제하는 것과 같다, 정치권에서 너무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

각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들고요. 다만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명함 배부하는 데 무슨 선거사무소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서 안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채익 위원 하여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기간 또한, 기간도 이것 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줄 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 3년 뒤에 일정한 기간을 지금 현재보다는 좀 확대하는 수준에서 한 다든지 이런 부분, 또 중앙선거위가 중선거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그리고 여야 어느 당도 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위가 정치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부분, 정답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선거위가 우리 의견으로 낼 것이 아니라, 학계에 저희들도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입법할 때, 검토할 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상부 사무총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아닙니다.

○문병호 위원 이번의 이 개정안은 정말 저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토론회인가요? 한 달 전쯤 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문병호 위원 그때 토론회 나가서 토론해서 어느 정도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방향은 아주 획기적으로 방향을 잘 잡으셨다 그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 일부 조금 과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늦기는 했지만 옳은 방향으로 자리를, 방향을 잡고 가신 데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까 정치

과잉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치 과잉이 아니고 정치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시 합격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도 안 되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함장 노릇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정치가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좀 더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제부터는 도입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과잉된 부분만 잘 정리해서, 큰 방향은 옳게 잡으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초의원·기초단체장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에 저는 분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선거를 반드시. 공천을 안 할 바에는 분리선거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걸 통합선거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거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대표들이 선거현장에 가서 우리 당 기호 1번, 2번 찍어 달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영향을 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호 뽑는 데서도 결정적으로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초 선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데 뽑기 잘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비용이 좀 들겠지만 분리선거를 하게 되면 정당이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할 때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선거 자체에 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초의회나 단체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의원·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분리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대충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거비용에 대해서, 분리선거 했을 때 선거비용이 어느 정도나 더 증가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문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기초장·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할 때 분리선거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84조 이것이, 과거에 기초의원선거가 정당공천제가 폐지됐을 때 이때 그 부분이 위헌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 그걸로 인해서 가정해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에 정당이 과거처럼 내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천한 사실을 각 후보자가 또 공표할 것이고 또 해당 후보자는 어떤 특정 정당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색상을 쓰게 되고—홍보물이라든지—이렇게 될 때 유권자가 혼란에 빠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투표결과로 이어져서 정말 투표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 내년도에 그런 84조가 위헌상태에서 또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선거 관리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갔을 때는 분리선거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정당 표방, 저는 당연히 정당 표방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오히려 선거에서 그 사람이 어느 당 소속이나 이것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맞습니다.

○문병호 위원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당인지 아니면 아예 무소속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선출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당 표방을 해서 내가 민주당 또는 새누리당의 조직국장이다, 오히려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당 공천이 폐지되더라도 저는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정당에 소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소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당을 탈당해야 되지요? 지금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당을 탈당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탈당해야 됩니다.

○문병호 위원 그것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정당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무소속이 아니라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병호 위원 나갈 수 있게,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출마하게 되고……

○문병호 위원 무소속도 자기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나는 정당에 소속하고 싶으면 소속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위헌이기 때문에 정당 표방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당 표방하는 것이 옳다, 왜? 자기가, 정치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왜 정당 표방을 못 하게 하는 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유권자들이 정당 소속인 사람을 선호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게 맞고, 또 한편 지금 정당 공천 폐지하더라도 결국 정당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정당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에서 통제도 되고 또 정당의 정책을 반영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전혀 정당하고 절연돼 가지고는 통제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정당 공천이 폐지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유권자에게 혼란이 오고 정당 공천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중앙당과 정당 속에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정당 공천 폐지가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할 때 상당히 깊이 연구해 볼 필요……

○문병호 위원 정당에 예측되는 게 나쁜 게 아니지요. 정당에 예측돼야 되지요. 예측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아니, 정

당 공천을 폐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문병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큰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10년 주기로 큰 틀에서 선거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이 우리 선거제도를 더 새롭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94년도 그다음에 2004년도에 큰 틀의 변화를 한번 가져왔고 또 10년 만에 단행하는 혁신조치인데 정치를 정상화하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 이렇게 좀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 노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규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아주 다양한 해석과 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다 포지티브한 규제 방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라는 것 빼고는 다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작부터 제기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점이 좀 미흡하다, 많은 노력은 하셨으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치를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활동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 이 점이 지금, 물론 선관위가 입장이 좀 곤란하셔서 그렇겠지만 쪽 빼먹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지구당을 합법화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의견들을 정당이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지금은 정당의 최일선 조직을 불법화해 놓아 버렸

기 때문에 정당의 최일선 조직이 지금 다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입법과정 중에 여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기는 하겠지만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정당후원금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감하게 제기를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 의견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이것은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소품이나 표시물 등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지점이 있다,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책·공약 평가 서열화 금지 폐지 이것 관련해서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정책·공약을 지금 평가해서 서열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겠다 이 조항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나, 이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믿을 만큼 신뢰할 만큼 되어 있느냐는 점을 더 살폈어야 된다, 우리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정책토론 허용하고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이것은 저는 말을 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화하는 것 이것은 큰 방향에서는 긍정적인데 어쨌든 적용 이런 것은 조금 선거과열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 지원 개선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후원금제도하고 연동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확 줄거든요. 정당후원금제도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이 줄어든 액수를 정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연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편 선거운동 방송시설 포함 여부, 이것은 제가 따로 강조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종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풀어 버리는 것은 쉽게 동의가 안 되겠지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이것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재외동포들 만나 봐도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또 질문하실, 아까 함진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 선관위에서 아마 얼마 전에 선거 관련, 지금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여러 개 보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지금 혁신적이다, 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관위에서 개정의견 이런 것 내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선관위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려면 시민단체도 좋고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원들, 국회에서 이런 것 심층적인 어떤 가닥을 좀 잡고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 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법의 핵심이, 가장 좋은 것이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제일 많이 거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유독 그런 어떤 준법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싫기 때문에, 또 좀 외람됩니다만 중앙선관위나 도 선관위, 위로 올라갈수록 중앙선관위가 좀 공신력이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떤 것을 즉답해서 선거현장에서 즉석에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주어야 되는데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선거현장에서 선거를 하다가도 의문 나

는 것이 있으면 자꾸 묻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공직선거법 읽어 보아도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제에 알기 쉽게,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제하고 제약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충 공직선거법이 되었던 관련 선거법률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자체적으로 학력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 불문하고 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도 본인들도 답을 못 해요.

지금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들도 답변을 못 하는 것을 우리보고 지키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선거하다 끝나요. 제가 그래서 선관위에 또 자주 하는 말이 밑에서 받으시면 고참 바꾸라고 그래요, 고참, 경력 있으신 분, 저는 바로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질러요, 또.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의 초점은 알기 쉽게 공직선거법 개정 시, 또는 다른 관련 법률 개정 시 제발 좀 보통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라든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봅니다, 규제의 대상은.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은 것이 허위사실 비방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팩트도 없이 또는 어떤 그런 근거 없이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어느 정당이든 어느 후보자든 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낙선되고 나서 그것 뭐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든가 명예회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습니까? 잘 아시지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 선관위에 모 사무총장이 계셨어요. 제가 18대 때 낙선되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하는 데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그분이 출마를 했었어요. 아마 개정의견을 제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는 많은 규제를 하고 많은 단속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출마를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의견을 무지하게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이겠어요?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상황이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자금이라든가 허위사실 비방해대는 것을 가차 없이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문병호 위원 얘기하신 대로 과감하게 풀 것은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비후보 등록 일본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세계적으로 다 푼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검토 안해 봐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18대 때 낙선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현역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명함 뿌리는 것이야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권자한테 점점, 이것은 유권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365일 선거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명함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문제는 어깨띠를 두르고 1년 365일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이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후보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굳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선거운동을 시키는 취지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역이 되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또 혹시 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이유도 유권자의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거마다 다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각 선거별로 120일로, 대통령 240……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뭐 6개월을 주든 1년을 주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1년 365일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권자를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또 후보자를 풀어 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거사무실 설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도 낙선 때 선거사무실을 후보자 등록하고 해 봤지만 사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선거사무실을 설치 안 하더라도 굳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은 조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국회의원들께 죄송한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것 나갈 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 내용요? 그런데 거꾸로 지방의원들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을 달리해서 광역단체장이나,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만두어야 돼요. 그 내용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압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이 얼마나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함진규 위원 개정의견을 내셔야지요. 저도 진짜 드리기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것이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은 할 것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대선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경기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대선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 두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만두어야지요.

○함진규 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개정의견 내시라니까요. 국회의원 눈치 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지만 교육감 선거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두실 거예요? 사실 정당 관여가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토론회도 많이 개최했습니다만 사실 정당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다 관여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출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정당 관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게는 30억, 40억씩 자금 조달을 해서 한다는 게,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체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선관위에서 취합된 게 있으면.

힘든 선거예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대서 그

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가든 아니면 임명직으로 가든 아니면 정당 표명을 해서 정당 공천을 하게 만들든 이렇게 좀 내놓고 선거를 가야지 이것을 전부, 지금 교육감…… 그거 아시잖아요, 문제가 많은 것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정의견을 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면서 ‘민원인의 날’을 정해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각 동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놓여촌지역 이런 데는 동별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의정활동을 좀 하고 싶어도, 민원인의 날 민원 접수하고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것 선거의 연장선상으로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제 지구당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지구당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에?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가서 민원을 접수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선거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민원 청취하고 그것을 하는데, 내가 뭐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요? 제 PR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진표** 함진규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후원금을 정치인이 대부분 받습니다. 받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소액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제도개선을 해서 차라리 일정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방안을 찾아야 깨끗한 의정활동이 되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해서 알기 쉽게 선거법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표** 예, 말씀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첫째는 알기 쉽게 표현해 달라, 이것이 사실은 아무리

알기 쉽게 하더라도 규제가 너무나 많아서 알기 쉽게 해도 저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입법을 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방법의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떤 선거운동도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불편 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허위사실, 거짓말하는 것, 그다음에 매수하는 행위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풀고 자유롭게 하면, 규제가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쉽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불법 규제 이것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또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5번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담겨 있느냐 하면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선관위에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선관위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나 소장한 데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당사자 후보자가 그것을 소명하는 내용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게끔, 사실을 알고 하게끔, 이것이 왜곡돼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 제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후보자 문제는 우리가 입법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논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관위 소관이 아니에요. 교육자치법에 있는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탁선거라든지 다른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도, 이것은 위탁선거관리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선관위가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서 입법 과정에서……

○**김태년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코멘트 하실 것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 의견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당 활동에 대해, 지구당에 대해서, 지구당이 복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뭐냐? 복원하는 게 맞다, 다만 그러면 과거에 폐지할 때 병폐가 뭐였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불법 정치자금이 통용되는,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가장 온상이자,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의 회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과정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투명화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구당 위원장의 사당입니다.

지구당원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당 공천,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국민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주듯이 정당의 당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때 당비까지 다 해결된다고 보여줍니다. 지구당 공천할 때도 당원이 의결을 해서 가야 되지, 현실적으로 볼 때 지구당의 위원장이 결국은 다 결정한다는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그 두 가지가 해소된다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보여줍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지금 선관위에서 낸 자료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예비 등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큰 것은 못 보고 아주 미세한 것에 대한 정당성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선된 그다음 날짜부터 계속 다리를 잡을 거란 말이요. 등록을 한 사람, 제가 노원구청

장을 했는데 거기가 구의원이 한 21명인가 이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5명씩만 등록을 해 봅시다. 100명이 우글우글하고 다녀 가지고 이거 일을 못 해요. 구청장, 국회의원 아무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2년, 2년마다 계속 돌아오잖아요. 어깨띠를 두르고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큰 대의 입장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상한 사람이, 나는 오히려 데스크에서는 발상할 수 있지만 그 밑의 필드에서는 전혀 아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 자격상실인가요, 당선 무효되는 게?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게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10년 됐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게 '94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초로 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20년 된 거지요.

○**이노근 위원** 20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함부로 못 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20년 전 걸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국회의원을 자격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것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20년 전을 갖다…… 그러면 국가에서 20년 전 최저생계비 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정당성이 됩니까? 최저생계비도 매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아까 방송토론 같은 것은 저는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냥 우글우글 다녀 가지고 온 동네 다 할 게 아니라 방송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마지막으로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지난 총선 후보자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신 분도 있고 또 낙선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체로 금품수수 또 금품살포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선관위의 해석과 또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가 필요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 이런 표현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해석과 사법부 판단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용어 중에 '관련'이라는 단어, '선거 관련', '관련' 이런 것은 사법부가 폭넓게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대폭 줄여나가는 작업이 우리 선관위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표 사무총장님, 코멘트하실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그 해석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법원에 1심·2심·3심이 있듯이 저희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 가서도 우리 기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제가 바뀌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규제가 많고 책 두께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알기 쉽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방법의 규제에서 비용의 규제로 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 해 주시고요.

정의 부분은 이것을 쉽게 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어서 우리 위원 회의의 과정에서 '이것은 이번에 뜻을 접자' 그래서 접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법제화를 하면서, 우리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 누구든지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마지막으로 유승우 위원님 하십시오.

○유승우 위원 아까 이채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기초의원 의 현행 중선거구 이것을 소선거구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개정할 수 없는지?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다 우리 여야 의원 막론하고 갖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읍·면·동이 대표성이 없는 데가 많단 말이지요. 항상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광역으로 있는 도의원들이 또 하는 게 있는데 중선거구 이게 돼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기초의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갖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떠난 제도인데 이번 차제에 중앙선관위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우리 쇄신포의 위상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논의만 해 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것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것이 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바쁜 시간에.

○위원장 김진표 그래서 쇄신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좀 더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권을 부여받아야 가능하고, 입법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고 해야 할 과제들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차피 지금 이 의제들을 사전에 결론을 내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당 원내대표한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각 당에서 의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 열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왕에 만들어 놓은 정치쇄신포가 만약에 입법권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치불신특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얘기 다 해 놓고 만들어 가지고 의견서로 각 상임위원회에 넘겼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전부 뜯어고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유야무야돼 버리면, 그러면 정치쇄신포를 만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양당 원내지도부보고 입장을 좀 분명히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아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중선거구, 소선거구 얘기지요?

○위원장 김진표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

은 말씀이,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도에 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선거법소위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거법소위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전체에서, 전체가 선거법소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선거법소위로 별도 만들면 두세 명 남을 텐데 뭘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무총장 어렵게 오셨는데 좀 곁고립더라도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각급을 달리해서 출마하는 것 있지요?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교차해서 나가는 선거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드리기 어려운 질문 저도 드렸는데, 상식의 문제인데 그걸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차제에 입법화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 공평성을 잃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국회의원과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함진규 위원** 무슨 직무의 연관성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직무의 연속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연속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선거구·소선거구 문제는,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역구나 이런 데 상황하고 또 다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중앙당 차원하고 각각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우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노근 위원** 저기는 어떻습니까, 20년 전의 100만 원, 당선무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이걸 제 개인 소견입니다.

재판에 회부돼서 할 때, 아마 판결을 할 때 벌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을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

다. 그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그 금액의 과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선거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쳐 가면서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느끼셨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간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고 또 안을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조문화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제시하신 그런 문제들을 실제 조문화할 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방향으로 선거운동 활동의 자유는 풀고,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랬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입을 풀면 그게 돈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현재 지난 1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선거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고 운용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하면 돈 안 쓰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하다가 그 독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전체 특위에서는 오늘 이 정도로 다루는 게 어떤가 싶고요.

아까 마지막에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선거법소위원회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현재 정치쇄신소위는 의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건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쇄신소위를 좀 빨리 열도록 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은 없는데 한 소위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국회쇄신소위원회는 급한 것은 일단 처리를 했으니까 위원회 소위 간의 업무 배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면 소위 명칭을 바꿔서라도 그런 뜻이니까.

우리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전부 정치쇄신 입법에 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평소에도 저한테 요구 사항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고르게 참여해서 선거법과 정치쇄신에 관한 법률을 우리 특위의 기한인 9월 말까지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를 간사들하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동 과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소위 운영을 위해서 업무 분장을 하는 문제는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거기에서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선관위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토론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 관 영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진 표	김 태 년	문 병 호	박 민 식
심 상 정	유 승 우	원 혜 영	이 노 근
이 명 수	이 채 익	정 몽 준	함 진 규
황 주 흥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정	구
전 문 위 원	임	채	주
입 법 심 의 관	권	영	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무 총 장	문	상	부
선 거 정 책 실 장	윤	석	근
법 제 국 장	박	영	수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서용교	정몽준	새누리당	2013. 6. 12

**○의견서 회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13. 6.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6월 17일 회부됨